



튀김고구마의 원가 및 영업시스템의 부정사용 관련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0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平成9년(와) 제2182호
판결 일자	1999. 7. 19.	판결 결과	원고 전부패소
원고	교와(共和)자재 주식회사		
피고	1. B, 2. 주식회사 메이쇼(明商)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튀김고구마에 관하여 실제 원가, 이익률은 비밀로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더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회사 내부에서는 극비로 이익을 획득하는 영업시스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유용성, 비공지성		

02 사건 개요

원고는 주로 중국에서 식품, 식품원료의 수입과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원고의 북경사무소장 및 식품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자이며, 피고회사는 식품원재료의 수입과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본건 정보(튀김고구마에 관하여 실제 원가, 이익률은 비밀로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더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회사 내부에서는 극비로 이익을 획득하는 영업 시스템)를 피고회사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여 냉동튀김고구마를 수입 및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개시(開示)금지, 냉동튀김고구마의 판매금지,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등을 청구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본건 정보는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이 충족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본건 정보는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B가 원고 재직 중에 원고가 제시한 본건 정보를 이익을 도모하고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회사에 공개하였으므로, 피고 B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에 해당하며, 상관습상 위법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본건 정보는 피고 B가 원고 재직 중에 자신이 얻은 정보로서 원고가 제시한 정보는 아니며, 피고 B는 통상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이익을 도모하고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은 없으므로 피고 B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회사는 이를 알고, 또는 중과실에 의해 본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본건 물품을 니시노상사를 통해 이토요가도에 납입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8호에 해당한다.		피고 B의 부정경쟁행위가 없는 이상, 피고회사의 부정경쟁행위도 없다.

04 판결 요지

원고가 보호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극비로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영업에 활용한다는 추상적 영업 시스템 자체로 보이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독자적인 경영방법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건 정보는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공지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고, 동일한 거래처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05 Key Point

이증장부를 만들어 놓고 영업에 활용한다는 추상적 영업 시스템 자체는 유용성 및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고, 동일한 거래처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